

제 3 자가 게재한 명예훼손적인 정보에 대한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은 미국 연방통신품위법에 의해 면책되며, 그 법률 발효 전 완성된 행위에 대한 발표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Zeran v. America Online Inc.,

25 Med. L. Rptr. 2526 (미연방제 4 지구항소법원 1997. 11. 12. 선고)

오관석(수원지방법원 판사) 저

판시요지

미국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 이하 CDA 라고 함) 230 조 (47 USC 230)에 의해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computer service providers)는 제 3 자가 유발한 명예훼손적인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이 사건은 Oklahoma 시의 연방정부 건물 폭파사건과 관련된 자극적인 선전문구가 씌어진 티셔츠를 판매하는 광고가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의 전자게시판에 게재되어 열람자들이 이를 보고, 원고(Kenneth Zeran)와 똑 같은 이름(first name)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사실은 그 광고는 원고가 알았거나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게재된 것이 아니고 원고는 그 티셔츠의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도 관련이 없었던 이 사안에서 원고는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를 상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비록 그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CDA 의 발효 이전에 완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CDA 230 조는 결과적으로 그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소급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요지로 판시한 같은 취지의 하급법원인 미연방 동부 버지니아주 관할 지방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Kenneth Zeran 이라고 하는 개인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인 America Online Inc.(이하 AOL 이라고 함)를 상대로 AOL 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이 사건 1 심법원인 미연방 동부 버지니아주 관할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이 사건 판결법원 미연방제 4 지구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판시취지를 거의 그대로 수긍하여 이를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95 년 4 월 25 일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AOL 의 전자게시판에 “사악한 오클라호마 티셔츠”(Naughty Oklahoma T-Shirts)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 내용은 1995 년 4 월 19 일 발생한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 소재 연방정부 건물 폭탄 테러사건과 관련된 자극적이고도 저속한 표현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한다며 그 티셔츠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고 Ken(*Kenneth의 애칭으로 보임)에게 전화를 걸면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익명의 자가 일으킨 장난에 의하여 원고는 그날 수없이 많은 전화공세에 시달렸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원고를 욕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까지 위협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그가 하는 사업상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함부로 변경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이에 원고는 그날 즉시 AOL에 전화를 걸어, 자기가 처한 곤경에 대하여 고객담당 책임자에게 설명하였는데, 그 책임자는 원고에게 내용을 피고회사의 전자게시판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안심시키려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회사의 방침상 그 게재내용을 취소시키는 별도의 내용을 게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995년 4월 26일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비슷한 내용의 새로운 티셔츠 판매 광고내용을 또다시 피고회사의 전자게시판에 게재시켰고 이에 다시 원고는 위와 같은 전화공세에 시달렸다. 이러한 자극적인 광고문안 게재사태가 4일이나 더 계속되었다. 이에 원고는 계속 피고회사에 항의하는 한편, 원고가 거주하는 시애틀시의 FBI 지부에도 이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후인 1996년 4월 23일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자극적인 정보를 게재한 당사자인 성명불상자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지 못하였다.

피고회사는 이 소송의 제기 직전에 서명, 발효된 미연방법 CDA의 면책규정(47 U.S.C. 230)을 인용하면서 이를 항변사항(affirmative defense)으로 주장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신원미상의 제3자가 인터넷을 통해 게재한 명예훼손적인 정보를 즉각 제거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켰으며, 그러한 정보를 취소시키는 별도의 정보게재를 거절하였고, 향후 동종의 게재물에 대한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는 1996년 제정된 미연방법 CDA가 원고의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금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회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청구원인에 기한 소송으로부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CDA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면책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비록 CDA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를 면책시킨다 할지라도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가 전자게시판 등에 명예훼손적인 정보가 게재되어 있음을 통지(notice)받았다면, 그 업자는 CDA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회사는 이 사건에서 CDA의 제정, 발효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소송상 청구당하고 있으므로 CDA의 면책규정은 이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에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법원은 첫째, CDA의 규정은 제3자가 유발한 정보에 대한 이 사건 피고회사와 같은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시키는데 그 분명한 입법의도가 있고, 설사 그 업자가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가 없고, 둘째 CDA 제정의 명시적 입법의도는 이 사건 소송과 같이 CDA 제정, 발효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예외없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고, 비록 그 원인관계의 행위가 그 법제정, 발효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이유(요약)

1. CDA (section 230)의 면책조항에 관하여

인터넷에 관한 1997년 미연방대법원의 획기적 판결인 *Reno v. ACLU*, 117 S. Ct. 2329 [25 Med. L. Rptr. 1833]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인터넷은 현재 약 4천만의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애용하고 있는 상호 연결된 컴퓨터의 전세계적 연결망”이다. 그리고 각 개인들이 이러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를 중개하는 컴퓨터서비스업체들에 의해서인데, AOL은 이러한 중개적 컴퓨터서비스업체 중의 하나이다. 피고회사의 인터넷운영 네트워크에 전송되어지는 정보 중 상당수는 수백만 피고회사 고객들이 전자통신(e-mail)이나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을 이용해 발송하는 것이다.

원고는 일단 원고가 신원미상 제3자의 장난을 피고회사에 통지한 이상, 피고회사는 명예훼손적인 게재내용을 즉시 제거할 의무가 있고, 또 피고회사의 고객들에게 그 정보의 허위성을 고지할 의무도 있으며, 또 장래에 있을 수 있는 명예훼손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회사는 “중재적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나 이용업자는 또 다른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그 어떤 정보에 관해서도 출판업자(publisher)나 방송인(speaker)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CDA 제 230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을 주장한다.(47 U.S.C. 230 (c) (1)).

CDA 230 조는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들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법리의 개념에 따른 출판업자로서 소송상 취급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통적인 출판업자의 편집적 기능인 출판할 것인가, 취소할 것인가, 연기할 것인가 또는 그 내용을 고칠 것인가 따위를 결정하는 기능의 행사에 관하여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가 유책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면책조항의 입법의도는 무엇인가? 미연방의회는 새롭게 싹트는 인터넷 산업에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소송에서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주목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즉 위 조항은 부분적으로는 인터넷 통신의 강건하고 씩씩한 성격을 보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또한 그러한 매체 산업에 관한 정부의 규제, 간섭을 최소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미연방의회는 CDA 230 조(b) (2)에서 밝히기를, “미합중국의 정책은 연방이나 주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유지됨으로써 인터넷 및 중개 컴퓨터서비스제공업체에 관한 활발하고도 경쟁적인 자유시장질서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원래 명예훼손적 메시지를 인터넷에 게재시킨 유책자가 책임을 면제받는다든 것은 아니다. CDA 230 조(b) (5)에 의하면,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설물의 불법거래자, 사생활 추적자, 성희롱자 등을 징벌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연방형벌법의 강력한 적용을 보장하는 데에 미연방의회의 CDA 제정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CDA 230 조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들로 하여금 그 서비스를 통한 자극적인 표현물의 유포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함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서 위 조항은 New York 주의 판례인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s. Co., 1995 WL 323710 (N.Y. Sup. Ct. May 24, 1995)에 대한 화답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미연방의회는 위 Stratton Oakmont 판례에 의하여 제시된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들의 자율규제에 관한 반인세티브적(disincentives)인 성격을 제거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원고는 또 주장하기를, CDA 230 조의 면책조항은 단지 출판업자의 책임(publisher liability)만을 제거하였을 따름이지 배포업자의 책임(distributor liability)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그런데 불법행위(torts)의 법리에 의하면, 출판업자는 비록 그 명예훼손적인 표현물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임에 반하여, 배포업자는 자기가 배포하는 표현물에 함유된 명예훼손적인 내용에 관하여 최소한 일지라도 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근거가 되는 명예훼손적 표현내용에 관하여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보통법상 자명한 법리이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피고회사에게 명예훼손 표현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하였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통지는 피고회사가 위 표현물의 명예훼손적 존재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해 배포업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는 취지이다.

이에 살피건대 출판업자나 배포업자나 모두 그 법적 의미를 명예훼손 법리의 맥락에서 갖는다고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는 법적으로는 출판업자로 간주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회사는 전통적 의미의 출판업자의 정의에 그 개념상 포섭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는 CDA 230 조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원고는 자신이 피고회사에게 한 수 차례의 통지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지위가 출판업자에서 배포업자로 전환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판단하건대 위와 같은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곧 법률적인 평가에 의하여도 그 통지를 받는 객체의 지위를 출판업자에서 배포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일단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게재물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전통적 의미의 출판업자의 개념에 딱 들어맞는 개념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즉 게재할 것인가, 편집할 것인가, 그 게재를 철회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을 바로 출판업자의 기능으로서 그것은 바로 위 CDA 230 조가 책임을 면제시키는 바로 그 대상인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보아도 만일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포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 업체들은 자기들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때마다 잠재적인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각자의 통지는 그 게재 정보물을 둘러싼 제반환경에 관한 조심스럽고도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게 될 것인데, 결국 그러한 조사는 그 정보물의 명예훼손적 성격과 과연 그 정보물을 계속 게재시킴으로써

법적 책임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하는 즉각적인 임기응변의 편집적 결단을 포함한 일종의 법적 판단이 될 것이다. 그런데 비록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인쇄출판 매체물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의 컴퓨터서비스제공업자를 통한 수많은 게재정보물의 용량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사와 판단의 요구는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 일종의 감당하기 불가능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있어서 엄격책임론(strict liability)과 마찬가지로 통지에 의한 책임(liability upon notice)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일종의 제재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되는 표현억제의 사전적 수단(chilling effect)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제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CDA 230 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의회의 입법의도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법(common law)이 적용되고 따라서 그만큼 230 조의 면책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의회의 입법의도와 위 규정 내용은 이 법원이 보건대 너무나 명백하고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성문법률의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보통법이 부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보충하건대, 의회의 의도, 즉 인터넷을 통한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그와 대립되는 보통법의 손해배상청구를 능가, 우월하여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CDA의 230 조(d) (3) 은 규정하기를, “이 조항과 불일치하는 여하한 주법과 지방법에 의한 그 어떠한 소송상의 청구도 제기될 수 없고, 그 어떠한 책임도 부과될 수 없다,” 고 하였음은 주목하여야 한다.

2. CDA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하여

CDA는 1996년 2월 8일 서명되어 발효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1996년 4월 34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비록 CDA 230 조가 자신이 제기한 이 사건과 같은 소송을 금지한다고 할지라도 CDA의 발효이전에 완성된 피고회사의 행위에 기인한 이 사건 소송을 금지하도록 소급되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CDA 230 조는 그 문리해석상 그 발효일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은 그 발효일 이후에 제기되어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무릇 법률의 소급효 문제는 원래 법률이 그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적용되어질 때 생기는 문제이다. 그런데 CDA 230 조는 피고회사와 같은 컴퓨터서비스제공업체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소송제기에 관하여 규제할 따름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230 조의 면책 조항 발효 2개월 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명백하고 그렇다면 CDA의 규정이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적용되어지는 것은 사실상 소급적(retroactive)인 것이 아니라 비소급적(prospective)인 것이다.